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년 8월 11일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5. 7. 21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95. 7. 26

라. 상정 및 의결

○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임시회

·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 : 95. 8. 10

· 제2차 내무위원회 의결 : 95. 8. 10

2.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민경철)

가. 제안사유

○ 중소기업 공장입지난으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을 확대하여 입지난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아파트형 공장 중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60일이상 휴업시 추징 함. (안 제14조의2)

다.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창기)

내무부 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대책일환인 중소기업공장입지난을 해소키 위하여 도 지역만 실시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자치구 지역

까지 확대 실시코자 함으로 제출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 ▶ 현재 달서구 관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경영하는 기업의 현황과 본 조례 시행후 지방세 감면혜택 가능여부는?
- ▷ 현재 달서구 관내의 아파트형 공장은 월성동 86-1번지 김해석외 11명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사료 됨.
- ▶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하던 중 60일이상 휴업시 지방세를 추징 하겠다는데 그 사유는?
- ▷ 본 조례의 개정안중 지방세감면규정은 영세기업육성을 위한 취지이므로, 60일이상 휴업시 그 기업을 계속 영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 아파트형 공장설립운영시 임대자에게도 지방세 감면혜택이 가능한지?
- ▷ 본 조례의 지방세 감면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육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임대자에게는 수혜가 없다고 사료 됨.

5. 심가결과

○ 원안가결(전원찬성)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신 설></p>	<p>제 14 조2(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지방세법제 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u></p>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아파트형공장)
 - 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2.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 ①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